

# 2021년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4. 26.(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8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31건(안전번호 제2021-41356호~4277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41356호~41371호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41372호~41397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가 직접 촬영, 편집한 영상물, 게시글이 함께 삭제 또는 전송중단될 수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7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8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63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41356호~4277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41356호~41371호는 실명의 민원인들이 홈페이지 또는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1-41356호~4135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등 2건을 각 5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1-41358호~41371호는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 ‘☀☀☀☀☀’ 등 27건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특히 안건번호 제2021-41371호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는 1997. 8. 13.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인 미국 애니메이션임. 해당 저작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 시즌을 자체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하여 ☀☀☀☀☀☀☀☀까지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기타 시즌의 경우 우리말 자막이 제공되는 합법 시장의 플랫폼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게시물은 게시자가 공식 홈페이지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제3자가 작성한 우리말 자막을 싱크한 뒤 ★★★ 동영상 업로더를 통

하여 게시한 것으로 확인됨. 총 10개 게시물 중 ~~공식 홈페이지~~ 각 1회차씩 총 3개 게시물을 제외한 기타 7개 게시물은 현재 합법 시장에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공식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특별한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은 비상업적, 비배타적인 개인적 사용에 대하여서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지적재산 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 다만 이때에도 '홈페이지 이용자는 디지털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기술을 비롯하여 콘텐츠 등을 다운로드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지적재산의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제2021-29회 분과위원회(2021. 3. 2. 개최, 2분과)에서 ★★★ 이용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시된 극본(어문저작물)을 연기 가이드 등을 추가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에서, 비록 원저작물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시보기 차원에서 제공 중인 것으로, 해당 경로를 통한 자유로운 열람은 가능하나, 원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대한 허락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41356호~4137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1-41371호에서 제공하는 '☀☀☀☀☀'는 저작

권자 의사에 반하는 이용인 것으로 보임. 저작권자는 공식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통해 비상업적, 비배타적인 개인적 사용에 대하여서만 지적재산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임.

- B 위원: '※※※※※'를 제공한 블로그를 확인한 결과, 광고가 게재되어 있음. 상업성이 있다면 제재를 해야 할 블로그일 것으로 보임.
- C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원저작물을 특정 경로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자유이용에 대한 허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정 경로라는 것은 특정 홈페이지 한 곳에 공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여러 경로를 이용하여 공개를 했더라도 저작권자가 공개한 범위를 초월하여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됨.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개수와 상관없이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로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 해당 경로를 통한 접근이 자유로운 것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자유이용의 허락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임.
- C 위원: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금지의 의사표시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제2021-29회 분과위원회 사안의 경우 다운로드를 금지했다거나 자유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제한은 없었음. 다만, 그러한 명시적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공중의 이용에 공개한 것 자체를 자유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초월적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음. 해당 사안의 경우 권리자인 극본의 작가가 직접 신고하였다는 특이점이 있었음.

- A 위원: 그렇다면 제2021-29회에서 다루어진 사안은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한 건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금번 심의 사안은 명시적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추정되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음.
- C 위원: 자유이용을 허락한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영어를 못하는 이용자의 해당 저작물 감상을 돕기 위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자막을 입혀서 업로드하는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이런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국가 언어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한 자유이용을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A 위원: ‘☀☀☀☀☀’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 홈페이지 화면을 제시함)
- A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 시즌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저작권자가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음. 예를 들어 홈페이지로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이 경우 저작권자로서는 허용된 범위를 초월하는 이용을 원하

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홈페이지 약관에 지적재산의 이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을 수도 있음.

- 강나래 전문위원: 만약 홈페이지의 영상 및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자막을 이용하여 혼자 감상하였다면 사안을 다르게 볼 여지도 있음. 그러나 해당 사안은 감상에 그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게다가 해당 저작물은 OTT와 지속적으로 판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음.
- B 위원: OTT에서 제공하지 않는 시즌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음.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 제재를 가할 정도의 사안인가 의문이 있음.
- C 위원: 명시적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한다는 저작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음.
- D 위원: 동의함.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개연성이 높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가결하자는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41356호~4137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21-41372호~4139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 이용자들이 음악저작물 한 곡의 전체 분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 총 26건임.

이 사안들의 경우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인정되나, 동영상 업로드 형식을 취하면서 게시자가 직접 편집한 영상 또는 직접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거나 음악저작물에 대한 개인적 감상 및 소견을 함께 게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41372호~4139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제2021-63회 전체위원회에서는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 A 위원: 음악저작물에 대한 무단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함이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고의 시정권고하기로 가결한 바 있음. 그리고 오래된 음원, 특히 상업적 목적이 없는 블로그에 게시된 음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
- C 위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인지?

- B 위원: 제한된 공간에서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한 사안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임. 게다가 해당 영상에서 음원만 추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준수 안내를 할 필요는 있을 것임.
- D 위원: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경우 생기는 심리적 압박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본권과의 관계를 엄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체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호원의 모니터링이 명백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건에 한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1372호~4139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41398호~4277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더블패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4146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86포인트에 판매중인 사안으로, 2021. 2. 17.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임.

(방송 '고등래퍼 시즌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1-4213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16포인트에 판매를 하고 있고, 2021. 3. 26. 방영한 6화 에피소드의 전체 분량을 제공 중임.

(게임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4275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사안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65,000원에 판매중인 2020. 11. 10. 출시한 최신 게임임.

안전번호 제2021-42762호~42777호는 긴급대응 저작물로, 신속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영화 '\*\*\*\*'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영화 '\*\*\*\*'은 ♠♠♠♠♠♠♠♠♠ 넷플릭스에서 최초 공개된 우리나라 영화임. 안전번호 제2021-427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30포인트에 판매 중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체 분량 재생되는 것을 확인함.

(영화 '♡♡'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영화 '♡♡'은 ◇◇◇◇◇극장과 국내 OTT 서비스인 티빙을 통해 동시 개봉된 우리나라 영화임. 안전번호 제2021-4276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71포인트에 판매 중임. 마찬가지로 영화 전체 분량 제공중이며 재생되는 것까지 확인함.

이들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41398호~4277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D 위원: 민원인 신고 건을 포함 금번 심의 상정 안건은 모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같은 생각이며 가결 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 C 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음.
- A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41398호~4277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41372호~41397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건번호 제2021-41356호~41371호 및 안건번호 제2021-41398호~4277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3.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